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정원	위탁기간	수탁자	비 고
구립봄샘 어린이집	금하로 796 벽산6단지 아파트 관리동 (시흥2동)	162㎡	33명	5년 (2020. 3. 1. ~ 2025. 2. 28.)	박 영 순	
구립새길 어린이집	시흥대로12길 82 (시흥3동)	711㎡	99명	4년 4개월 (2020. 3. 1. ~ 2024. 6. 30.)	한 정 실	위탁기간 조정 (만65세 정년)

나. 주요위탁 내용

1) 현재 위탁기간

가) 구립봄샘어린이집 : 2015. 3. 1. ~ 2020. 2. 29.(5년간)

나) 구립새길어린이집 : 2017. 3. 1. ~ 2020. 2. 29.(3년간)

2) 위탁업무

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다)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3)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4) 재위탁 기간

가) 구립봄샘어린이집 : 2020. 3. 1. ~ 2025. 2. 28.(5년간)

나) 구립새길어린이집 : 2020. 3. 1. ~ 2024. 6. 30.(4년 4개월간)

다. 민간 재위탁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 재위탁 추진 필요성

1)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